

『한국과 국제정치』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7. 11.

개정 2021. 4. 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행 국문학술지인 『한국과 국제정치』의 투고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책임)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한국과 국제정치』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해 책임진다.
2. 편집위원회는 『한국과 국제정치』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의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심사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또한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4.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게재가 결정된 모든 논문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은 논문이 게재가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7. 논문에서 거짓 보고, 부정행위 의혹, 중요한 실수 등 게재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사 후 처리를 결정한다. 부정행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처리 절차는 7조 이하의 사항을 따른다.
8.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의 책임) 『한국과 국제정치』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투고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4.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중복게재 및 투고논문에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중복게재: 과거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게재하는 것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
3. 변조: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연구내용·결과를 왜곡하는 것
4.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결과에 대해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제5조] (제보자)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1항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이메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항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피조사자)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1항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제7조] (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1항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제2항 부정행위의 검증은 제보 시점 5년 이내에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심사 중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항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8조]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항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항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9조] (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1항 조사위원회는 편집주관과 편집주관이 지정하는 편집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단, 조사위원 중 일부는 연구주제에 따라 편집주관이 외부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준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본조사 결과의 확정 = “가, 부”의 기준에 따르며, 조사위원회의 2/3 찬성으로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판정)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1조] (후속조치)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제1항 투고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가 금지된다.

제2항 인터넷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다.

제3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및 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과 국제정치』에 부정행위 사실을 공시한다.

[제12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주관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의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